

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670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, 서울특별시, 성북구청,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을 체결함('15. 12. 15.)
- 나.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2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명 :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
- 나. 위치 : 성북구 길음동 1286-8 서울·성북미디어문화마루
- 다. 규모 : 지상 1~3층(연면적 2,925.23㎡, 전용 1,917.1㎡)
- 라. 사업주체 : 시청자미디어재단(방송통신위원회 출연기관) 서울센터
- 마. 주요시설 : 디지털교육실, 장애인방송제작실, 편집실, 사무실 등
- 바. 주요사업
- 미디어 교육 지원 : 미디어체험 프로그램, 콘텐츠 제작 교육 등
 -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: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
 -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: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

사. 출연금액(안) : 285,660천원

- 인건비 151,360천원, 임차료 85,600천원, 운영비 48,700천원

아. 출연의 필요성

-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에 따라 센터 운영비 지원 필요

<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>

제5조(운영비 부담)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.

1.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%를 부담한다.
2.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%를 출연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방송법」 제90조의2

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2 회계연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시민소통담당관 소통지원팀 강이랑(☎2133-6440)